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1년 하반기 JPDC 인턴 공개모집 면접전형 계획 알림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1년 하반기 JPDC 인턴 공개모집 면접전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7일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■ 면접전형 계획

- (대상) 원서접수자 전원
- (일시) 2021.11.26.(금)
 - ※ 채용사이트 내 응시표를 통해 개인별 참석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.
- (장소)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D동 지원자 대기실
- (주소)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
- (면접방법) 블라인드 면접, 다대다 면접
- (평가항목) 사고와 자세(20), 미래에 대한 열정(30), 조직·직무이해도 및 창의력(20)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판단력(20)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(10)
- (합격자 선발) 최종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발
- (준비물) 제출서류,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중 하나), KF-94마스크

■ 서류제출: 면접전형(11/26) 참석 시 반드시 제출

분야	자격요건	제출서류
행정	◦ 공고일 기준 제주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	◦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
행정 (취업지원)	◦ 청년(만 29세 이하)에 해당하는 자 ◦ 제주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◦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◦ 주민등록초본 ◦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도내 소재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◦ 다음 중 하나 - 차상위계층: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-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 - 한부모가족: 가족관계증명서

※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참석 시 제출하며,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부적격자의 경우 면접결과에 상관없이 불합격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, 주민등록번호 미표기

※ 차상위계층확인서, 장애인증명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발급 가능

■ 향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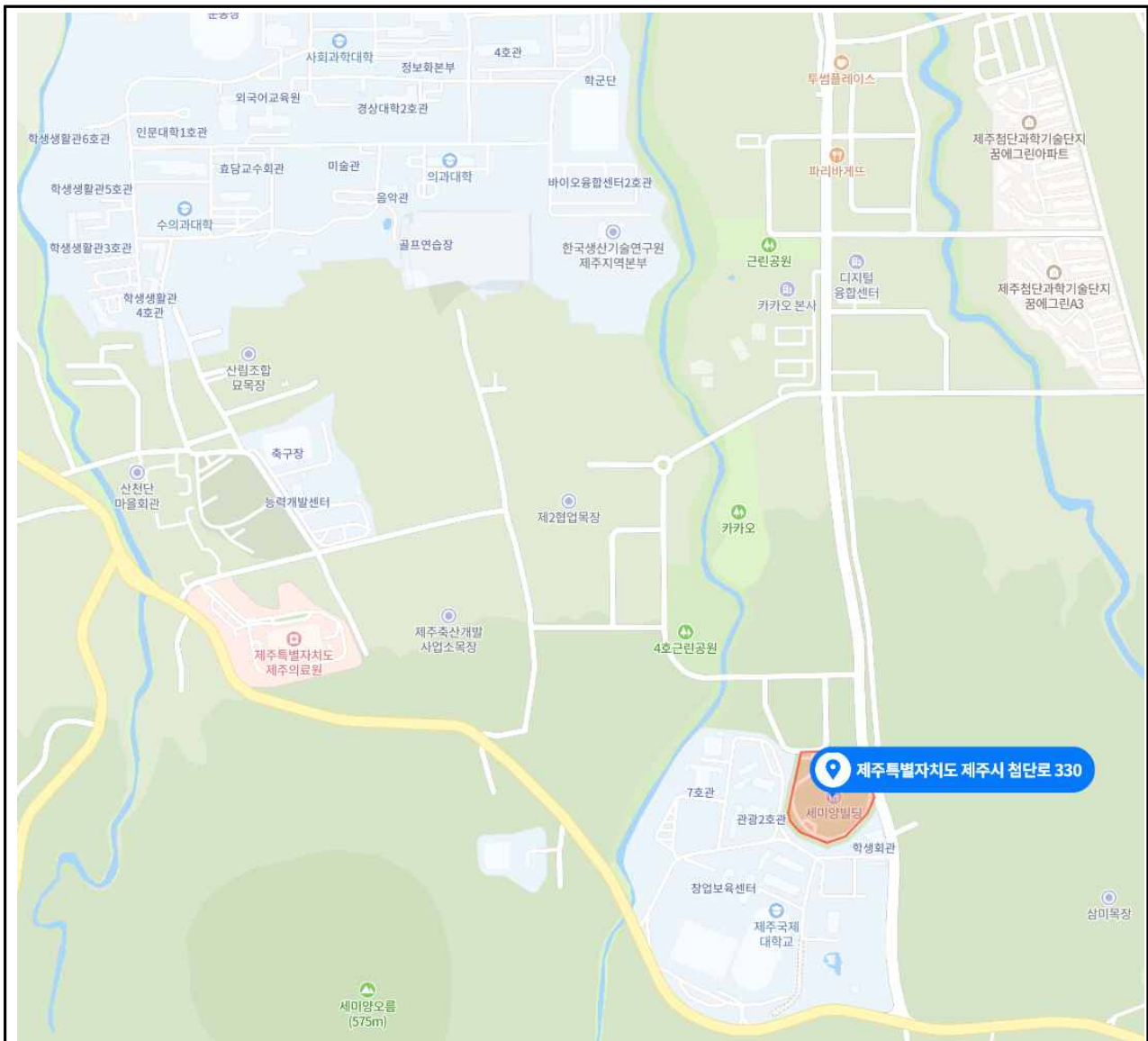
구분	일정(예정)	비고
합격자 발표	11.30.(화)	
근무 실시	12.29.(수)	

■ 유의사항

- 서류 미제출 또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한 경우 면접 전형 결과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면접전형 일시, 장소, 개인별 참석시간, 교통편 등을 사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참석시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참석시간 조정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급적 단정한 차림(정장 등)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면접 진행 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등의 경우,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.
-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.
- 기타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(☎064-780-3514)으로 문의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,
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■ 면접장소



- 주소: 제주시 침단로 330 세미양빌딩 D동
-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권해드리며, 당일 대중교통 운행여부 및 버스시간표는 '제주버스정보시스템(<http://bus.jeju.go.kr>)'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